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4. 2. 2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2월 21일 14:00 ~ 14:49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원장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4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4년도 제1차 임시 및 제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4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4년도 제1차 임시 및 제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2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처분하는 내용

○ (위원)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음. 다만, 협회장의 처분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 검사방해 행위 10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8조의제1항 제1호는 해임권고, 제2호는 직무정지에 대한 것이고 제3호가 문책경고인데 이번 검사방해 행위의 요건 사실은 문책경고의 요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그리고 200여개의 자료가 제출되었고 6개의 자료가 미제출된 것에 대해서 직무정지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기존 제재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또한, 기존 검사방해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사례를 꼼꼼하게 살펴보니 주로 적극적 작위행위였음. 즉,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증거자료를 파괴하는 행위 같은 것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허위진술 등으로 인해서 검사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사회적 파장도 크며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었음. 이번 사안은 이러한 기존 사례들과의 비교해볼 때,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책경고로 심의하였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호 안건과 관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등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협회 및 협회장의 검사방해 행위는 인정되나 협회장의 검사방해 행위는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문책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3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운용사 검사를 신속히 실시해서 무인가 부분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논리에 맞다는 판단이 듦. 제척기간 등이 문제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사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그 부분도 큰 틀에서 한번 같이 보겠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사용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인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인정하기에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4,000만 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 금융회사 간 외환파생거래를 금융투자업에서 제외하고, 일부 해외 상장증권의 매도거래는 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환거래 신고가 면제된 경우 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호『**아트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7호『**㈜멜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8호『**㈜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자본시장법상 아트만자산운용㈜에게 과태료 1억 2,000만 원, ㈜멜론자산운용에게 과태료 1억 800만 원,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게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호 안건과 제38호 안건과 관련하여 아트만자산운용㈜과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창업초기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하여 아트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하여 과태금액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며,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음. 제37호 안건 ㈜멜론자산운용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제36호 및 제38호 안건은 수정 의결하고, 제37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36호 및 제38호는 수정 의결하고, 제37호는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호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과태료 3,160만 원을 부과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호 안건과 관련하여 스틱얼터너티브㈜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창업 초기 소규모 금융회사의 단순·경미한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위반인 점을 감안하여 임원 해임 사실 미공시·미보고 건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최종 과태료는 3,16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호『○○○○○○○○ **주식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투자자 모집대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는 부정거래행위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발행인과 주선인을 제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 부동산업 충당금을 기존 요적립률에서 30% 상향 조정 하려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2호『㈜**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여부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민은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혁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알뜰폰 서비스) 지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3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수협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5년간 한시 완화하고,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호『**롯데카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카드㈜의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4호 안건과 관련하여 롯데카드㈜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지배구조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호『**신한카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6호『**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7호『**엠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8호『**도이치파이낸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카드㈜ 등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정보의 정확성 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5호부터 제48호 안건과 관련하여 신한카드㈜ 등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금번 과태료 부과 건은 운용리스 상품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을 등록한 첫 위반사례이며 4개사가 전산개발을 통해 시정을 완료한 점,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온 시기('22.8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태료를 20% 면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확약서 징구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각각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49호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의 신용정보의 정확성 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0호 『**㈜왓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왓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청에 대해 예비허가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1호『**㈜더존비즈온과 ㈜더존홀딩스의 합병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정보회사인 ㈜더존비즈온과 ㈜더존홀딩스의 합병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6호『**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7호『**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위원) 이렇게 횟수를 줄이고 집중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지 조직과 예산 편성을 할 때 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인원을 감안했던 것이 사실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듦.

○ (위원) 아마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최근 한 2~3년, 전임 원장님 때부터 검사를 하면서 금융회사가 예측가능 하도록 하고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그런데 실제 작년과 재작년 검사업무를 해봤더니 저희가 정기검사와 같은 계획된 검사일정 말고 현안 대응 내지 긴급상황에 따른 검사수요가 최근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나 자본시장이나 취약부분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게 되다 보니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대로 반영하고 나중에 사안별로(case by case)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정기검사는 큰 축에서 내실 있게 규모를 줄이면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운영하되 현안검사 대응역량을 추세적 분석을 통해 확보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 같이 녹아들어가다 보니까 계획된 검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음. 다만, 최근의 검사 양태 등을 보면 같은 한 건의 검사를 하더라도 인원이라든가 시간 내지는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이번 보고드린 검사 계획을 상반기·하반기 운용하면서 중간상황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음. 그에 따라서 내년 검사계획 또는 예산과 인력을 짤 때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8호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을 통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이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하지 않는 내용 등의 비조치의견서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49분 폐회)